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문수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육아휴직 기간연장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(안 제11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본문”을 “본문 또는 법 제19조제2항 단서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6호는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,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사실 또는 신청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이거나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육아휴직의 신청 등)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 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 다. <단서 신설> 1. ~ 5. (생 략) <신 설>	제11조(육아휴직의 신청 등) ① ----- 본문 또는 법 제 19조제2항 단서----- ----- ----- ----- --. 다만, 제6호는 법 제19조제2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에 한정하며, 증명자료를 첨부 해야 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 인의 배우자가 법 제19조제1 항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사실 또는 신청인이 「한 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 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이거나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 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라 는 사실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476